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제정 : 2021. 3. 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원칙 및 사업 관련 제반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 대리인 및 협력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 ① "사업 관련 법 등"이란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각종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 ② "자율준수"란 회사의 임직원이 사업 관련 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규제당국" 등"이란 사업 관련 법 등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 ④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이란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주관부서"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 12. 15.>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선임)

- ① 회사는 효율적인 CP의 운영을 위하여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지 않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한다. <개정 2022. 6. 7., 2022. 12.15.>
- ② 자율준수관리자 결원 시 그 후임자 선임까지 자율준수관리자 소속 조직의 차상위 직급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독립적 업무수행)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1. 자율준수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자율준수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사업관련 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이 규정의 개정안 발의
7. 기타 이사회가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 7 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시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과 관련된 계획 수립
2.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3. 자율준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4. 사업 관련 법 등 및 이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5. 자율준수 행동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6. 자율준수 활동 상황에 기록 및 관리
7. 규제당국 등과의 업무 협조
8. 내부고발시스템 개발 및 관리
9. 주관부서의 통솔 및 관리 <개정 2022. 12. 15.>
10. CP의 운영과 관련된 대외 인증·평가 업무 수행(CP 등급평가, ISO 37001, ESG 등)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에 대한 불비나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업 관련 법 등이나 이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CP의 운영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10 조(전담부서)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주관부서를 두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주관부서에 대한 지시 및 통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 6. 7., 2022. 12. 15.>
- ② 주관부서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책임과 권한에 따라 성실하게 CP를 운영한다. <신설 2022. 6. 7., 2022. 12. 15.>
- ③ 주관부서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 2 절 CP 위원회 <본절신설 2021. 9. 13.>

제 11 조(CP 위원회 구성)

- ① CP 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직원의 포상과 제재, 기타 회사의 CP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 ② CP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부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사안에 따라 위원 구성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안건에 따라 배석자 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2023. 12. 29.>

[본조신설 2021. 9. 13.]

제 12 조(CP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 ① CP 위원회는 반기 1 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2 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4.>
- ② CP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에 대한 심의·의결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재발 방지 등 필요 조치의 권고·자문
 3.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공유 및 협조 논의
 4. CP 관련 사내 규정·지침 등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5. CP 모범 임직원의 포상 또는 위반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심의
 6. 기타 회사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부 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본조신설 2021. 9. 13.]

제 13 조(CP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주관부서는 CP 위원회의 소집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개최 1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2. 12. 15.>
- ② CP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 9. 13.]

제 3 절 임직원

제 14 조(의무)

- ① 임직원은 이 규정 및 사업 관련 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③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이 규정, 사업관련 법 등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자율준수관리자(또는 주관 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15.>

④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 또는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또는 주관부서)의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 3 장 CP 의 운영

제 15 조(자율준수 의지의 선언)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준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의지를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16 조(자율준수편람)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CP의 기준과 절차 및 사업 관련 법 등을 포함한다.

②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한다.

③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모니터링 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1 회 이상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대한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험평가 및 임직원의 CP 준수여부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관부서 및 유관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사전 업무협의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가. 제 14 조 제 5 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 나.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위반 및 부패 관련 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시상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상 및 제재조치의 기초가 된 평가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신규 입사자와 승진자는 신규 입사 및 승진 확정 후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규정 및 사업 관련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구매, 영업 등 사업 관련 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 및 CP 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4.>
- ⑤ 임직원 대상 교육은 집합 교육, On-line 교육 및 관련 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 등 다양

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법령상 중요한 변경 및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의 교육 이수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고 미이수자 또는 CP
위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4.>
- ⑦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은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 19 조(사업 관련 법 등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2. 사유서 제출
 3. 경고
 4.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및 의견 제시
- ② 제재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다.

제 20 조(포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의 준수여부 점검결과가 우수한 자
 2.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3. 자율준수 교육이수 우수자
 4. CP 관련 우수 제안자
 5.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관련 퀴즈 응모 혹은 시험 응시 우수자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자
- ② 포상 대상자 및 규모는 대표이사 보고 및 승인에 따라 결정한다.

제 21 조(내부 신고)

-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수단을 통하여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V-GMP : Better KOLMAR – 윤리경영 위반행위
 2.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8 길 61(내곡동) 자율준수관리자
<개정 2022. 12. 15.>
 3. 홈페이지 제보코너 : <http://www.kolmarholdings.co.kr/kor/> <개정 2021. 9. 13.>
-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전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익명 신고의 경우에는 익명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 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절차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조치, 회복 및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제 22 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 ③ 보관에 필요한 내용 및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문서 등의 작성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3 조(운영성과 및 유효성 평가)

- ① CP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승인 하 회사 내의 CP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 24 조(공시)

회사는 CP의 운영 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제 25 조(세부지침에 대한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개정

제 26 조(개정의 필요성)

사업 관련 법 등의 개정 및 회사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변화된 사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 27 조(개정절차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법규 등 개정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② 전면개정의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시기)

- ① 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제재)

이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